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79
----------	-------

발의연월일 : 2025. 12. 18.

발의자 : 손솔·최혁진·임미애
전종덕·이주희·이용우
윤종오·정혜경·이기현
전진숙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특정 국가, 인종, 민족에 대한 증오와 차별을 조장하며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을 사회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집회와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음.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한 토론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표현의 자유 및 집회 시위의 자유 또한 인간 존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임. 그런데 특정 사회 구성원, 특히 사회적 소수자인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편견·적대심을 집단적·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는 토론의 가능성을 차단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다른 사회 구성원의 인간 존엄성을 해치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편견·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여 타인의 인권을 보호

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건강한 토론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편견·증오·차별·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편견·증오·차별·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p> <p>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2. (생략)</p> <p><u><신설></u></p>	<p>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인종, 국가, 민족,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편견 · 증오 · 차별 · 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u></p>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